생활 속 법률이야기

아동·청소년을 협박하여 스스로 음란물을 촬영하게 했다면?

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아동·청소년 인 피해자들의 비공개 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빌미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 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한 음란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게 했다면 아동·청소년의 성 보호에관한 법률위반(음란물제작·배포 등)죄 가 성립할까요?

〈사건 개요〉

A씨는 공범들과 SNS 등을 통해 알게 된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개인정보를 탈취할 수 있는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거짓말로 유 도하였습니다.

피해자들은 이러한 피싱사이트에 접속했고, 이를 이용해 A씨와 공범들은 트위터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탈취하였습니다.

이뿐만 아니라 청소년인 피해자들이 트 위터에 비공개로 저장해 놓은 나체사진과 신상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빌미로 피해자 들을 협박하였습니다.

이후 피해자들에게 음란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전송·게시하도록 하여 아동·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, 아동·청소년인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였습니다.

관련 법률

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(정의)

-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- 5. "아동·청소년성착취물"이란 아동·청소년 또는 아동·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

으로서 필름·비디오물·게임물 또는 컴퓨터 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·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.

아동복지법 제17조 (금지행위)

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2.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

대법원 판례

아동·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 상으로 한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 청소 년보호법위반(음란물제작·배포 등)죄가 성 립할까요?

아동·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을 처벌하는 이유 및 아동·청소년의 동의가 있다거나 개인적인 소지·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하더라도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'아동·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'에 해당하는지 여부(적극) / 직접 아동·청소년의 면전에서 촬영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동·청소년이용음란물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촬영행위를 하게 하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한 경우, 아동·청소년이용음란물 '제작'에 해당하는지 여부(원칙적 적극)와 그 기수 시기 (=촬영을 마쳐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된

때) 및 이러한 법리는 아동·청소년으로 하여 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촬 영하게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(적극) 에 관하여 판례는 『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(이하 '청소년성보호법'이라 한다) 의 입법목적은 아동·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적 행위를 한 자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성 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아동·청소년을 보호하 고 아동·청소년이 책임 있고 건강한 사회구 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다. 아동·청소년이용음란물은 직접 피해자인 아 동·청소년에게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 처를 안겨줄 뿐만 아니라, 이를 시청하는 사 람들에게까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 상적 가치관을 조장한다. 따라서 아동·청소 년을 이용한 음란물 '제작'을 원천적으로 봉쇄 하여 아동·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데 서 비롯되는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 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. 특히 인터넷 등 정 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음란물이 일단 제작되 면 제작 후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 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. 이러한 점에 아동·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을 처벌하는 이유가 있다. 그러므로 아동·청소년의 동의가 있다거나 개 인적인 소지·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하 더라도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의 '아 동·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'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.

피고인이 직접 아동·청소년의 면전에서 촬 영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동·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촬영행위를 하게 하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면, 특별한 사정이었는 한 아동·청소년이용음란물 '제작'에 해당한다. 이러한 촬영을 마쳐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이 된 때에 제작은 기수에 이르고 반드시 피고인이 그와 같이 제작된 아동·청소년이용음란물을 재생하거나 피고인의 기기로 재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. 이러한 법리는 피고인이 아동·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』(대법원 2018. 9. 13. 선고 2018도9340판결)라고 판시하였다.

아동·청소년 성착취물은 그 직접적인 피해 자인 아동·청소년에게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 신적 상처를 안겨줄 뿐만 아니라, 이를 시청하 는 사람들에게까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합니다

성적 확대나 착취로부터 아동·청소년을 보호하고 아동 청소년이 책임 있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아동·청소년을 보호해야 하지 않을까요?

(출처/명쾌한 판사와 함께 하는 법원 이야기)